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7
----------	-----

제출년월일 : 1994. 6.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제안이유

지역사회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를 적극 발굴 수여함과 동시에 동시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 협조를 유도코자 함

주요골자

- 가. 지금까지 수여대상이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으로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 되어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선정 원칙과 기준을 정함 (조례안 제2조)
- 나. 대상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되, 필요시 유관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조례안제3조)
- 다. 대상자 결정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심의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 긍지감을 갖도록 지역문화행사, 간담회등 각종 도정관련 행사시 초청 하는 등 대우기준을 마련함(조례안제4조제6조)
- 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가 원할때는 공유재산과 공공시설의 이용,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권리, 기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함(조례안 제7조)

- 붙임 1.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조례개정조례(안)
2. 구 조 례

충청북도명예도민증서수여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충청북도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타시도 출신으로 충청북도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는 도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시도 인사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도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자
3.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자
5. 기타 도,시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추천) ① 수여대상자 추천은 시장·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유관기관·단체장에게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추천시기는 년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결정) 수여대상자 결정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후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5조(증서수여) 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1호서식, 타시도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2호서식에 의한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시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대우)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도민으로서의 긍지감을 갖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대우를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시군정 간담회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새충북, 도,시군정보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시군정소식지 제공
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7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

1. 도유 및 시군유재산과 공공시설의 무료(감면)이용 또는 우선이용
2. 도, 시군으로부터 균등하게 각종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시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제8조(취소)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를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충청북도 명예도민증서는 이조례에 의하여 수여한 것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명 예 도 민 증 서

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씨에게 충청북도 도민증서를 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이에 본인이 서명하고 충청북도 관인을 찍어 이를 증명합니다.

서기 19 년 월 일

대한민국 충청북도

충청북도지사 ○ ○ ○ (인)

CERTIFICATION OF HONORARY CITIZENSHIP BE IT KNOWN THAT :

As the Governor of Chung Cheong Buk Do Province and on behalf of the citizens,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 ○ ○

an Honorary Citizenship of Chung Cheong Buk Do. IN WITNESS WHEREOF, I have affixed my signature and seal of Chung Cheong Buk Do on the ○ day of the ○ in the year of our Lord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ninty ○

○ ○ ○

Governor of Chung Cheong Buk Do
Republic of Korea